

##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25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3. .

제 출 자 : 중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- 상위법인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·운영 등 변경사항 반영
-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·운영함으로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기능 관련 내용 삭제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「지방재정법」 용어와 일치
- 나.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재정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추가
- 다.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별도 구성·운영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기능 삭제

### 3. 근거법규 : 「지방재정법」

### 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### 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 : 예산담당 협의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의견반영
  - 위원회 구성 시 성별비율 고려하도록 내용 명시(안 제3조제1항)
- 라. 입법예고 : 2015. 1. 6. ~ 2015. 2. 2.(의견 없었음)

##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”를 “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,”을 “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, 제37조의 2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수립, 투자심사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지방재정 운영방향”을 “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(단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 시는 제외)

제2조제3호 중 “투자사업 계획수립”을 “재정투자사업심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지방재정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

5.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,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

제2조제6호 중 “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

같은 조 제2항 중 “부구청장이 되고”를 “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원은 민간위원(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)과 공무원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)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당연직 위원 : 행정지원국장, 복지경제국장, 건설도시국장

2. 위촉직 위원 :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

제5조제1항 중 “예산업무담당 주사로”를 “예산업무담당으로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지방재정정기공시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 시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필요시”를 “재정투자사업 심사 또는 재정정기공시 안전이 있을 경우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1주일전에 당해”를 “1주일 전에 해당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출석한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”를 “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”로, “수당”을 “예산의 범위에서 수당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###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,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<u>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</u>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<u>재원조달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3.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<u>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5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 시기,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</li> <li>6. 그 밖에 <u>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 이라 한다)</u>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</li> </ol> <p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, 제37조의2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수립, 투자심사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기능) <u>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</u>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중구지방재정계획 수립</u>-----</li> <li>2. <u>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</u> (단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 운영 시는 제외)</li> <li>3. <u>재정투자사업심사</u>-----</li> <li>4. <u>지방재정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5. <u>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, 특수공시를 할 사항</u> 하 할 사항</li> <li>6. ----- <u>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</u>-----</li> </ol> <p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② ----- <u>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</u>, ----- -----.</p>

(제174회-본회의 제2차부록)

현 행	개 정 안
<p>③ 위원은 울산광역시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국장 및 실·과장급 공무원과 구의회의원, 지방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제5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로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6조(운영)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, 지방 재정정기공시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 시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7조(자료제출 및 협조)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8조(임기) 위원장과 공무원의 임기는 현보직 기간까지로 하고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③ 위원은 민간위원(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국공립 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)과 공무원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)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.</p> <p>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당연직 위원 : 행정지원국장, 복지경제국장, 건설도시국장</p> <p>2. 위촉직 위원 :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</p> <p>제5조(간사) ① ----- 예산 업무담당으로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운영) ① ----- 재정투자사업 심사 또는 재정정기공시 안건이 있을 경우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자료제출 및 협조) ① ----- 1주일 전에 해당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수당과 여비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수당과 여비) -----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----- -----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----- -----.</p>
<p>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0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에 ----- -----.</p>

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**심 사 보 고 서**  
(의안번호 1125)

**1. 심사경과**

- 가. 제출 일자 : 2015. 3. 4.(수)
- 나. 제출 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5. 3. 9.(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5. 3. 12.(목)

**2. 제안이유(제안설명자 : 최일식 기획예산실장)**

- 상위법인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·운영 등 변경사항 반영
-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·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기능 관련 내용 삭제

**3. 주요내용**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「지방재정법」 용어와 일치
- 나.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재정영향 평가에 대한 사항 추가
- 다.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별도 구성·운영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기능 삭제

**4. 전문위원 검토의견 : 없음**

**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